

| 07 | 조상들의 '범죄수사' 슬기

'무원록의 과학'으로 선정 펼쳤다 (無冤錄)

글_ 김 호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kimho@catholic.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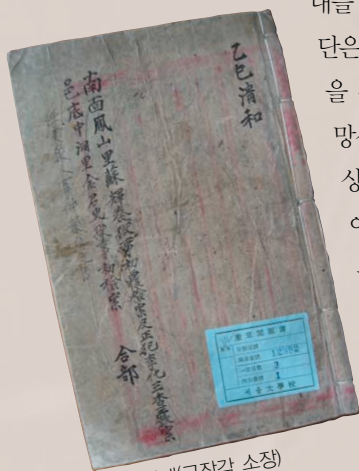
1796년 황해도 평산 서봉방의 장용암 마을에서 한 젊은 남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을 양반 양성향이라는 자가 간수를 마시고 죽은 것이다. 사연인즉 다음과 같았다. 한 마을에 사는 상놈 이춘대의 딸 죽금이는 이팔청춘의 꽃다운 나이였다. 본시 건들거리던 양성향이 죽금이에게 정신이 팔려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던 차였다. 죽금이가 하루는 개울가에 빨래를 하고 있는데 양성향이 그만 춘정을 이기지 못하고 뒤에서 달려들어 갑자기 껴안았다. 백주 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하더니 죽금이의 비녀를 뽑아들고는 “이제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면서 달아난 것이다.

죽금이 아버 이춘대는 이 소식에 노발대발하며 양씨 집안으로 달려갔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우리 딸의 혼사길을 막았으니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며 양성향의 아버지 양계수에게 대거리하였다. 심지어 양반인 양계수에게 ‘너 죽고 나 죽자’며 칼을 휘두르는 등 신분사회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였다. 갑자기 상놈에게 봉변을 당했으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아들 놈 때문에 화도 내지 못한 아버지 양계수는 죽금이를 서둘러 시집보내도록 하자며 이춘대를 구슬린 후 집에 돌려보냈다. 사단은 그날 밤 일어났다. 아들 양성향을 본 양계수는 격분하였다. 집안 망신뿐 아니라 양반인 자신이 웬 상놈의 칼에 비명횡사할 뻔한 것이 더욱 억울하였다. “너 같은 놈은 필요없으니 나가 죽으라”고 꾸짖은 것이다. 야심한 밤, 아들 양성향은 간수를 마시고 집 뜰에서 나뭇굴었다. 놀란 집안 사람들이 쌀뜨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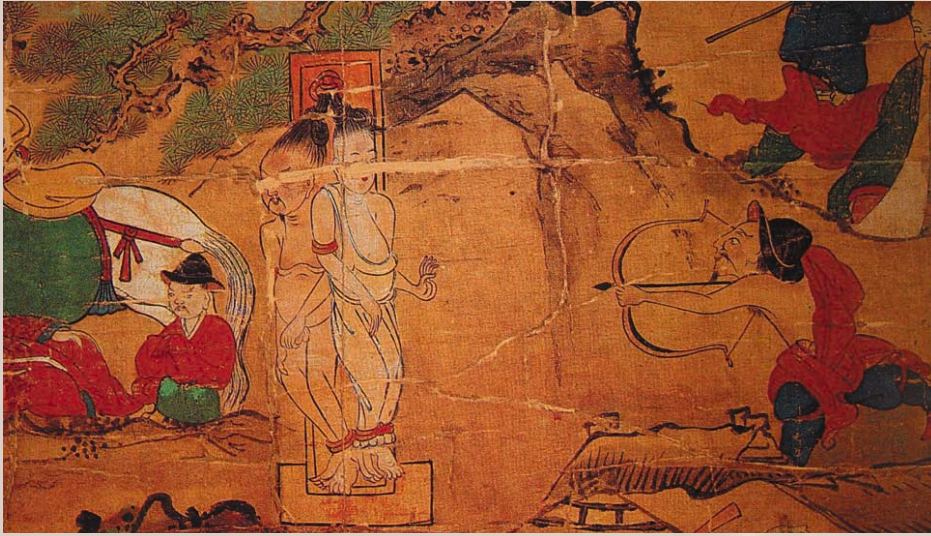
마시게 하는 등 노력하였지만 그만 죽고 말았던 것이다. 아버지 양계수는 관아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자살한 자식의 죽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는 없지만 이춘대에게 당한 치욕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상놈 이춘대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는 아들의 시체를 상놈 이춘대의 집으로 가져다 놓았다. 일종의 시위였다.

70여 항목 만들어 검시보고서 작성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사또가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야 했다. 평산부사이자 초검관인 유광천은 사건 접수를 받아 곧바로 사체가 있는 장용암 마을로 달려갔다. 의생(醫生), 서기(書記) 등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검시에 사용될 물건을 짚어지고 따라오라고 명하고 자신은 검시보고문안인 시장(屍帳) 몇 장을 접어 가지고 갔다. 먼저 양반 양성향의 시신이 있는 이춘대의 방 안에 가 보았다. 방 안이 협소하였지만 법례대로 시체와 사망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시체에서 동쪽으로는 벽까지 4척 8촌, 서쪽으로는 벽까지 4척 5촌, 남쪽으로는 벽까지 2척, 북쪽으로는 벽까지 5척 4촌이었다. 방 안이 좁아 시체를 마음대로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마당으로 끌어내 판자 위에 놓고 차례로 옷을 벗기도록 하였다. 오작사령이라고 하는 관아 소속 노비 도순이가 일을 담당하였다. 먼저 시신을 덮고 있는 푸른색 면이불 한 채를 벗겨내자 목면 저고리를 입고 누워있는 양성향의 시신이 드러났다. 바지의 허리띠에는 살아 생전에 차고 있던 담뱃갑 하나, 그리고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는데 살펴보니 조그만 거울 하나와 나무빗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알몸이 된 후 자세히 살펴보니 대략 23~24세 정도의 중간 몸집의 남자였다. 키가 주척(周尺)으로 7척 9촌이고 두발은 흐트러졌는데 2척 5촌이었다. 두 눈을 감고 입은 약간 벌리고 코에서 피가 흘러 나왔는데 전신의 살빛이 누런색이고 배는 팽창하지



검안 사례(규장각 소장)



간통한 남녀를 처형하는 모습을 그린 조선후기의 불화



조선후기 검시 장면도

않았으며 구타 등의 상처도 없어보였다. 약물 사고로 추측되었다. 유광천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시체의 앞쪽과 등쪽을 뒤집어가면서 시장의 향목에 맞추어 조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략 70여 항목의 신체 부위를 기록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독을 먹은지 의심스러워 은비녀를 향문에 집어 넣어보았다. 금방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변을 채취하여 가열하였더니 흰 색의 소금 결정 등이 나타났다. 간수를 마신 것이 틀림없었다. 증거를 찾기로 하고 양성향 집의 곳을 뒤졌다. 두부를 만들려고 만들어 둔 간수 병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 간수를 담아 마셨는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망 원인은 간수를 마시고 죽은 '복로치사(服鹵致死)'가 분명하였다.

조선 최초의 법의학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죽은 자의 원통함과 남은 가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법의학 지침서로 활용된 책이 바로 '무원록(無冤錄)'이었다. '무원록'은 원래 중국 원나라 왕여(王與: 1261~ 1346)가 1308년에 저술한 책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조선, 일본 등지에 전해져 법의학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다. '무원록'이 간행된 지 100여년이 지난 1435년(세종17) 조선의 조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종은 최치운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신하들에게 '무원록'의 해설을 명하였다. 이에 최치운 등은 명나라에서 간행된 '무원록'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고 '세원록'과 '평원록' 등을 참고하여 1438년(세종20) 겨울(11월)에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1년 여의 인쇄과정을 거쳐 1440년 봄 드디어 강원도에서 초판이 발행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중간(重刊)을 거치면서 '신주무원록'은 조선시

대 검시의 표준서적이 되었다. 예컨대 중종대 전라도에서 발생한 구질덕 사건의 경우, 독살과 자살 여부를 두고 '신주무원록'의 은비녀 조항이 활용된 적이 있으며, 선조대에는 검험이 끝나고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신주무원록'의 지침을 따르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조선의 사회 구조가 중국과는 달라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무원록'의 경우 비상(砒霜)을 먹고 죽은 조항 자체가 없었다. 중국에서 비상으로 인명을 해하는 사례가 드물었는지 모르지만 조선에서는 비상으로 살해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 '무원록'에 기록은 없지만 비상으로 죽은 것이 분명한지라 사건을 조사한 사포는 '비상치사(砒霜致死)'라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형조에서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 나머지 그만 파직된 것이다.

혹은 임금의 명령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숙종은 무덤을 파내면 서까지 검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범인들이 사건 발생 후 재빨리 시체를 땅에 묻어 검험을 방해하는 폐단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는 늘어만 가고 있었다. 그 첫번째 결과가 1748년(영조24) 간행된 구택규의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이었다. 세종대의 '신주무원록'을 기본으로 쓸데없는 것은 덜어내고 빠진 것은 보충하여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해진다 이해가 어려운 문구들과 단어들을 책 앞에 모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조선 법의학의 최고봉 '증수무원록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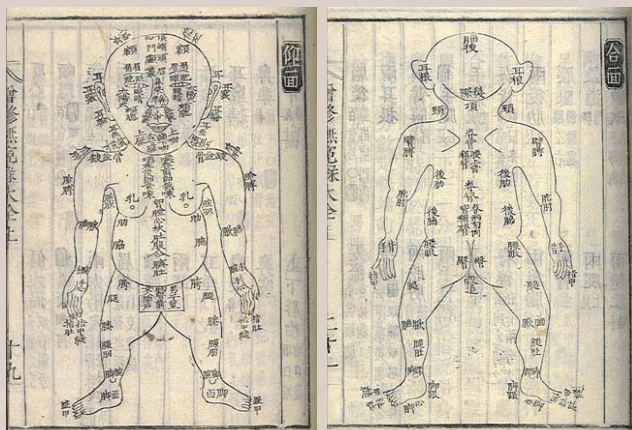
한편, 18세기 말 구택규의 '증수무원록'을 이어 그의 아들 구윤명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버전을 내놓았다. 우선, 순서와 분류를 보다 완전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당시까지 남아 있던 중국식

말투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둘째, 청나라 형부(刑部)에서 만든 '세원록(洗冤錄)' 해설본을 들여와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고 셋째, 오자와 탈자 등 문장을 교정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현실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이었다. 이는 '증수무원록(대전)'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였다. 단지 중국의 '무원록'에 주석을 한 정도인 조선초 '신주무원록'을 능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선에서 누적된 다양한 검검 지식과 수사 기법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이라면 모두 첨가한다는 정신이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조목마다 증보한 이 내용(附)이야말로 조선 법의학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구윤명은 문구나 용어 사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학자 김취하의 감수를 받았는데 전문가의 검수를 받고 그 결과를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더욱 완벽한 법의학 서적이 될 수 있었다. 김취하는 본문의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문에 첨삭을 가했는데 여기에 증(增)자를 붙여 구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증수무원록대전'은 보(補)와 부(附) 그리고 증(增)의 과정을 통해 완전히 조선화된 법의학 서적으로 재탄생하였다. 1790년 정조는 서유린에게 '증수무원록(대전)'을 언해하도록 명하였다. 어려운 한문본을 언해하여 널리 보급하려는 목적이었다. 역시 김취하가 시종 작업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듬해인 1791년 언해본 초고가 완성된 후 인쇄에 들어갔으나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인 1796년 '증수무원록대전'과 '증수무원록언해(이하 언해)' 두 책은 동시에 인쇄되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2종의 법의학서가 간행되었으니, 하나는 한문본이요, 다른 하나는 한글본이었다. 이 둘은 1905년 새로운 형법(刑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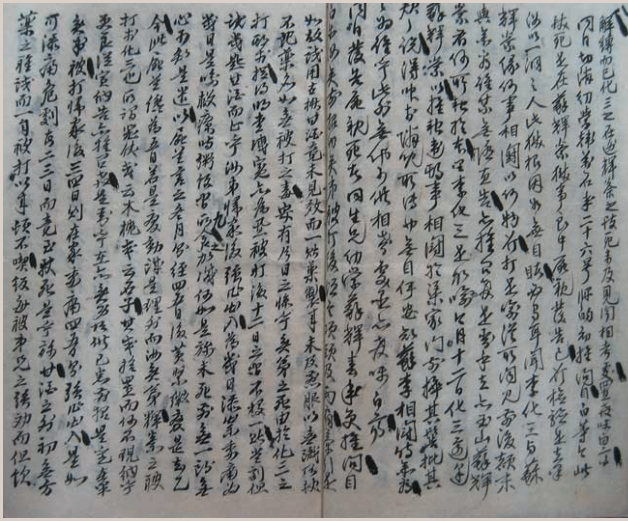
이 반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검시 지침서로 활용될 정도였으니 그 가치를 십분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색(顔色)으로 죽음을 살핀다

'언해'가 법의학 지침서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내용의 대부분이 검시(檢屍), 즉 사체 관찰 기술이라는 점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검시의 핵심이 시체의 안색(顔色)을 관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 더 흥미로울 것이다. 20세기 서양의학의 검시, 즉 사체를 해부하여 사인을 분석하는 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체의 상태를 중시한 '언해'의 검시 방법은 매우 색다른 느낌을 준다. 사물의 색을 통칭하는 안색의 종류에 따라 죽음의 원인을 달리 파악하였으므로 색(色)에 매우 민감하였다. 붉은색(赤色) 계통만 보아도 적색으로부터 적자색(赤紫色), 적흑색(赤黑色), 담홍적(淡紅赤), 미적(微赤), 미적황색(微赤黃色), 청적색(靑赤色) 등 매우 여러 단계로 색이 분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적색은 구타나 혹은 목을 맨 상처의 중요한 지표색이었다. 사체가 붉은색이라면 틀림없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자상(刺傷)의 경우라면 당연히 선홍색의 상처가 남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체의 색은 죽음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푸른색은 독살, 흰색은 동사(凍死), 황색은 병사(病死)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검시 기술이 안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안색을 위장하여 타살의 흔적을 제거하는 기술도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위장한 상처를 발각하는 방법 또한 개발될 필요가 있었다. 가령 흉기로 구타·살해한 경우 상처가 푸르거나 붉은 색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만약 깃버들 나무의 껍질을 상처 부위에 덮어두면, 상흔 안이 짓무르고 상하여 검은색이 되어 구타 흔적을 위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무원록'은 반드시 손으로 만져보아 부어오르지 않고 단단하지 않으면 위장의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범인이 사체를 부검하는 데 참여하는 관원을 사주하여 '꼭두서니' 같은 풀을 식초에 담갔다가 상처에 바르도록 하였다. 그러면 상흔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언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들면 사또는 반드시 감초즙으로 해당 부위를 닦도록 하라. 진짜 상처가 있었다면 즉시 나타날 것이다." 상흔을 위장하지 않았다 해도 사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시일이 오래 경과되면 시반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증수무원록대전 앞면(왼쪽)과 뒷면



이화삼검인 사례

피부가 검붉은 사람은 더욱 흔적을 잘 살필 수 없었다. 이 경우 활용된 것이 바로 법률(法物)들이었다.

은비녀, 파 뿌리, 소금 등도 과학수사 도구

법물이란 검시에 활용되는 보조 도구 및 수단들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100% 순도의 은비녀가 있다. 이밖에도 지게미(糶), 초(醋), 파의 흰 부분, 천초(椒), 소금, 매실과육 등과 창출(蒼朮), 조각(皂角) 등의 약재도 사용되었으니 지게미, 초, 파, 매실과육 등은 사체의 상흔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고, 창출, 조각은 시체가 놓인 곳의 약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흔적이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먼저 그 부위에 물을 뿌려 적신 후에 파의 흰 부분(薺白)을 짓찧어 상흔이 있는 곳에 넓게 펴 바르고 초에 담가 두었던 종이를 그 위에 덮어둔 채 한 시간여를 지난 후 이를 걷어내고 물로 씻으면 상처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 ‘언해’에는 위의 경우처럼 모두 과학적인 수사기법만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과학 기술의 한계로 인해 황당한 내용이 과학적인 수사법으로 둔갑해 수록된 경우도 있다. 핏방울의 응고 여부로 친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이 방법은 ‘친자(親子)인 형제가 혹 어려서부터 이별하여 헤어진 후 나중에 알아보려고 하지만 진위(眞僞)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각각 피를 내어 한 그릇 안에 떨어뜨리는데, 진실이라면 하나로 응결되고 아니면 응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의 응고에 대한 생리적 지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현대인이라면 그저 웃고 말 내용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형제가 아닌 사람에게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했을지 아무도 모른다.

‘증수무원록언해’를 언급하면서 ‘과학적’이라는 말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수식이 바로 ‘현실적’이라는 단어다. 후기로 이행하는 동안 조선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조선전기의 법의학 지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니 연탄가스 사고가 그 중 하나이다. 조선 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가스 중독 사건들이 조선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난방용 석탄의 사용이 집중되면서 가스 중독사가 자주 발생했다.

“서북 사람들이 흔히 온돌을 데우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다가 그 화기(火氣)가 냄새나고 더러운지라 훈증(熏蒸)을 받아 저절로 깨닫지 못하고 죽으니 시체가 부드럽고 상처가 없는 것이 밤에 자다가 꿈에 무서운 것을 보고 놀라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하는 한편, 사인(死因)을 분석하는 방법과 태도 역시 조선전기에 비해 더욱 세밀해지고 정교해졌다. 죽은 자라도 살핀 사람과 마른 사람을 구분하여 살피고 젊은 자는 빨리 상하는 반면 마르고 늙은 자는 천천히 부패한다든지, 또는 남과 북의 기후가 같지 아니하므로 지역의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든지, 산중(山中)의 경우 기후의 변화가 급격하여 시체의 부패정도에 따른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등이 그러한 사례다. 사건을 조심스럽게 취급하려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는 수법들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전과 사후의 상흔을 구별하는 방법 역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조선초의 ‘신주무원록’에는 불타 죽은 시체를 검시하는 경우 ‘입과 콧속’의 그을음 여부를 확인하여 생전과 사후의 사망을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 18세기의 ‘증수무원록언해’는 입과 콧속뿐 아니라 ‘목구멍’과 머리 뒷 부분에 그을음과 재가 묻어 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토록 지시했다. 편견 없는 수사, 인체에 대한 지식의 확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신중한 태도. 이런 것들이 ‘언해’를 관통하여 표출되는 내용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인정(仁政)의 정신이 깔려 있었다. 조선시대 위정자들이 꿈꾸던 ‘어진 정치’, 그것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무원록’의 과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 특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서울대, 건국대, 강원대, 한신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